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3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69,980원, 지방교육세 606,970원, 농어촌특별세 404,650원 합계 8,78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가. 원고는 2013. 12. 8. 원고의 대표목사인 B으로부터 [redacted]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2014.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redacted]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고, 2015. 1. 5.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7,769,980원, 지방교육세 606,970원, 농어촌특별세 404,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그 사실을 공정증서로 입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참조).

2) 한편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 서류가 '화해조서·인낙조서'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 반면(제1호), 그 증명 서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 제한하였으나(제2호), 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위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부칙 제1조, 제2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은 2013. 12. 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12. 15.자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2014. 10.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4년 제843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위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여기에 위 1)에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김선영

판사 홍영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부칙 <제25545호, 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